

사서직의 전문성과 국가고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Certification Test for Librarianship

남 태우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Nam Tae-woo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ung-Ang Univ.

정보화사회에서 사서직이 전문직으로서 인정받고 그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서는 격변하고 있는 정보환경과 교육환경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구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에서는 전문직성을 규명하고, 이를 확고히 하고자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사서자격증의 국가고시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그 해결책을 하나의 시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서론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신교육개혁의 변화추세로 사서직과 이를 양성하는 문헌정보학의 교육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내외적으로 급박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대학에 있어서 교육환경의 개혁에 따라 복수전공제도로 인한 학점의 최소화로 인한 교과과정의 재편성, 인턴쉽과 이로 인한 문헌정보학의 영역정립 등의 문제점은 우리들을 기로에 서게 하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 사서직이 전문직으로서 인정받고 우리들의 영역을 확실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격변하고 있는 정보환경과 교육환경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구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에서는 전문직이면서 비전문직으로 통제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 전문직성을 규명하고, 이를 확고히 하고자 하나의 대안적

방법으로 사서자격증의 국가고시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그 해결책을 하나의 시안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전문직의 속성과 조건

직업이란 노동의 분업이 사회적으로 범주화한 것으로서 사회구성원들을 유기적으로 상호 의존 토록 하고 사회라는 인간 집합체를 가능하게 하는 개인과 사회사이의 매개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직업들 중 일부는 전문직(profession)이라고 하여 일반적인 직업(occupation)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전문직(profession)은 보통 체계화한 전문지식, 전문직 성원의 충원에 공식적인 훈련, 직업적인 특징, 직업윤리 등에 의해 일반적인 직업들과는 구분되는 직업이라는 것으로 학자들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Carr-Saunders와 Wilson

은 전문직의 주된 기준이 특별한 훈련에 의해 얻어지고, 사회에 대한 봉사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며,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지적인 기술 (Intellectual technique)이라고 하였다.(Hall 1975, 72-78) 그들은 전문직 자신들에 의해 만 들어지고, 국가가 전문직의 기준을 보장해 주는 자격 및 면허제도가 바로 이 지적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것이라고 하였다. 자격면허제도는 전문직이 잠재적인 전문직성원들로 하여금 특별한 직업훈련을 통해 일정한 지적인 기술을 얻도록 강제한다. 그런데 '지적인 기술'이라는 용어 중에서 '지적'이라는 말이 보다 이론 지향적인 의미를 내포하는데 반해 '기술'이라는 말은 지식의 응용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두 용어가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문직의 특성을 보다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기술이외의 부가적인 기준도 포함시켜야 한다.

Moore는 전문직의 특성을 4가지로 규정하였는데, 첫째, 고도의 지적 훈련을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가져야 하며, 둘째, 공공에 대한 봉사를 주된 목표로 삼아 기술과 지식을 사회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할 책임을 지며, 셋째, 금전적 보수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며, 넷째, 업무 수행에 있어 자유를 중시하여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책임을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3. 사서직자격증에 대한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

요즘의 교육개혁이 지향하는 주요개념으로 '실용성', '경쟁력', '수요자 중심', '영역간 벽허물기' 따위가 부각된다. 그런데 '실용성'의 잣대가 무엇인지, '경쟁력'의 핵심이 제살깍기식 국내 순위 경쟁인지, '수용자 중심'의 요체가 수요자의 '필요'인지, '안일'인지, '허물기'의 개념은 상호보완을 지향하는 뒤섞기, 휘젓기 또는 잡기(雜技)를 뜻하는지, 당국의 지침도 불투명할뿐더러 교육주체들의 인식도 중구난방에 가깝다.(주경복 1996, 5) 이러한 와중에서 정보와 지식을 통정하고 전달해주는 전문직을 지향하고 교육시키는 문헌

정보학의 학문영역은 어디에 두어야 하며,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며, 교과내용의 편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교육의 질적 저하문제이다. 심화교육은 물론 기초교육마저 혼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전공학점의 최소화에 따른 교과목수의 축소로 전문성이 약화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교육적으로 유익한 과목을 많이 개발하여 절 높은 선택기회를 제공하기보다 교차선택의 폭이 넓어진 수요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산만한 선택대상들이 체계 없이 나열됨으로써 전공교과목을 저질화 시킬 가능성성이 많다는 점이다. 더구나 수요자의 '유인'을 위한 소모적 경쟁에서 오는 교육의 상업화는 동양전통의 교육관과는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절 좋은 내용보다는 눈길 잘 끌고 학점을 획득하기 쉬운 경박한 내용의 과목들이 잡화점식으로 개설되고, 교육적 잣대보다는 '인기를 위한', '인기에 의한', '인기의 인기'식의 충동 때문에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부조리한 양상이 전개될 소지와 개연성이 많다.

3.1 문제점

학점인플레이로 인한 최소학점 복수전공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우리학문분야에서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이론대 실체적인 학문성격과 전문직을 양성하고 있는 우리분야에서 36학점으로의 변화는 개혁인가, 개악인가의 문제에 직면한다. 둘째, 전문성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교과과정의 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독자적인 교과과정도 또는 독특한 교과과정의 개발과 이의 실행도 없는 상황에서 최소전공학점인정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되어 있다. 셋째, 인턴쉽 교육제도를 두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차제에 이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턴쉽은 전문직의 필수교과이자 전문직으로서의 존재를 확인케 하는 핵심적인 아이덴티티다. 36학점과

전문직성과 라이센스와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가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넷째, 자격증 교부조건의 불합리성이다. 현행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르면 2급정사서와 준사서의 자격증 교부의 조건으로 4년제 및 2년 제대학을 졸업한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복수전공 제의 실시로 4년제 대학에서는 36학점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에 2년제 대학에서는 60학점이상의 전공과목 이수자에게 준사서자격증을 주게 되어 있어 학점 상으로는 역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학점이수 단위가 많은 학생에게는 거꾸로 준사서자격증을 교부하게 되고, 역으로 이수단위가 그 절반에 그치는 4년제 대학졸업자에게는 단지 4년제라는 이점 때문에 2급정사서 자격증을 교부하게 되는 최악의 법적 불균형의 사례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다섯째, 복수전공제로 변화되었을 경우일 대비하여 교과과정의 표준화 내지 옵션으로 그 타입을 I, II, III... 등으로 개발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수해야 할 교과목은 이론과 실체적인 면에서 너무 많고 교육시간의 부족으로 생기는 불균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핵심과목에 대한 연구가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수학점 단위는 현저하게 줄어드는데 각 대학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이 중구난방식 편의대로 이루어진다면 학문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섯째, 복수전공포기자로서 주 전공학점을 60-70학점을 획득한 학생과 복수전공자와의 자격증교부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한 복수전공인 경우에 주·부로 구분할 때에 자격증의 인정문제도 또한 그렇다. 그밖에도 사서교육기관에서 배출하고 있는 학생들의 자격증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면에서 차제에 미국식의 Williamson Report나 Conant Report가 발행될 정도의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소전공 복수학점의 제도화로 전공 필수과목의 개념이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상기의 이러한 연구는 필수적이며, 또한 이로 인해 선·후수과목의 계층화로 교과목의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이나 정보센터 환경의 급격한 변화, 정보환경의 급

진적 변화, 교육과정의 변화 등으로 전통적인 라이브러리언 또는 라이브러리언쉽이라는 명칭의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와 관련된 직종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리고 기술진보에 따라 그 수와 범위가 증가되어 왔다. 이들 직종들을 표현하는 용어가 새로운 직종이 나타날 때마다 계속 도입되었다는 사실로 보아 매우 복잡하다. 전통적으로는 3종류의 직종이 있었는데, 이른바 문서관리자, 사서, 문헌사이다. 이 범주 내에서 서지학자, 색인작성자와 같은 특수한 전문분야가 직업으로 정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와 관련된 모든 직종을 비록 다양하지만 하나의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변경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정보환경의 변화는 그것을 더욱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기비하에 처해있는 우리들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장 빈번하게 호칭되고 있는 '정보전문가'와 같은 명칭으로의 변화도 피해야 할 것이다.

3.2. 해결방안 및 결론

위에서 분석된 문제점의 총체적인 해결책은 라이브러리언쉽의 국가고시제도의 도입과 이의 실시라고 생각된다. 이점에 대해서는 필자는 이미 1990년도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사서자격제도 이대로 좋은가'(남태우 1990, 265-280)라는 발제에서 주창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뒤 도서관법이 수차례 개정과 제정의 순환을 거치면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연구나 법적 대응이 전혀 구현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공인된 전문직의 지위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문직의 상대적인 위치를 밝히는 것이고, 직원의 자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전문직으로서는 매우 위험하다. 특히 정보전문직은 비전문직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전문직집단의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전문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은 우선적으로 사서직의 국가고시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파생되는 부가가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문직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직으로서 국가고시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분야는 없는 실정이므로 이 제도의 융통성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전장에서 규명된 것처럼 대학교수의 교육, 자격증, 윤리강령의 조건이 구비되었는데도 국가고시를 통하지 않는 자격증으로 홀대를 받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최소학점의 복수전공에서 오는 미 이수교과목의 연구를 전공 70학점대 수준으로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미 이수교과목을 국가고시교과목에 융통성 있게 포함시켜 수험생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는 방법을 적용시키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에 학점단위와 교과목을 명시해 주므로써 이론바 핵과목의 개발이 이루어 질 것이다. 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시행령에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자'를 대학에서 문헌정보학 전공교과목을 ()학점 이상과 이수해야 할 이론바 필수교과목을 나열하여 취득한자로 개정해 줌으로써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가고시제도의 실시로 공동연구환경이 구축되어 학문발전의 비약을 예견해 볼 수 있다. 이론바 공동연구, 핵과목의 개발, 표준적인 텍스트의 출판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넷째, 상기의 이러한 환경이 구축되면 국가고시를 위한 문제은행식의 체제로 학문발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학간 교수간의 밀접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섯째, 만일 국가고시제도의 도입이 조만간 어렵다고 한다면, 그 분위기가 성숙될 때까지 차선책으로 도서관협회에서 자격증 인정에 대한 고시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구적 노력으로서 협회의 권위와 자격증의 권위를 동시에 향상시키고 또한 확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제도에 소극적이거나 부정하는

학교나 기관일 경우에는 직업전선에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는 패러다임을 구축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개선책인 될 것이다. 예컨대 현장에서 사서직을 원할 시에는 협회인정의 자격증을 소유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고려하도록 학교, 협회, 그리고 직업전선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진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4. 참고문헌

- 남태우(1990). 사서자격제도 이대로 좋은가. 도서관문화 제 31권 6호
- 이재철(1978). 세종조 집현전의 기능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경복(1996). 굽은 나무 섭불리 바로잡다 뿌리 마저 상할라; 교육개혁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수신문 1996, 4월 8일자.
- Carr-Saunders, A. H. and Wilson, P. A. (1993). The Profession. Oxford, Clarendon Press.
- Giuliano, Vincent E.(1969).The Relationship of Information Science to Librarianship: Problems and Scientific Training. American Documentation, Vol. 20
- Harties, Roma A. (1992). Librarianship : The Erosion of a Woman's Profession. Norwood,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Lancaster, F. W. (1983). Future Librarianship : preparing for anunconventional career. Wilson Library Bulletin 57.
- Moore, Wilbert E. (1970). The Profession : roles and rul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